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6도741 준강제추행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영(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36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제1항에서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는 추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7

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이 선고되었는지 여부는 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41조 각 호에서 정한 형의 종류의 순서로 판단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을 새로 부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349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8. 30.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5. 4.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2025. 12. 1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벌금형 및 이수명령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이 벌금 500만 원 및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면서 새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한 것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